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나2045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21 선고 2021나204566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단22418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철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이현

담당변호사 배준모, 이재호

피고, 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21. 11. 23.

판결선고 2021. 12. 21.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19가단2241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남양주시 C 전 3,595㎡ 중 1,180/3,595 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9. 10. 17. 접수 제1150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황현찬, 판사 이효두, 판사 박이규